

# 建築法 施行規則

건설부령 제 134호

공포 : 1973년 9월 22일

## 차 례

- 제 1 조 : 건축허가신청등
- 제 2 조 : 건축허가서등의 서식
- 제 3 조 : 증축신고등
- 제 4 조 : 위법사항의 보고
- 제 5 조 : 착공신고서등의 서식
- 제 6 조 : 가사용승인 신청서 등의 서식
- 제 7 조 : 중간검사
- 제 8 조 :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보고
- 제 9 조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제10조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 제11조 : 안전, 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
- 제12조 : 위험물의 저장, 처리시설
- 제13조 :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지
- 제14조 :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보고
- 제15조 : 신분증명서의 서식
- 제16조 : 가설건축물
- 제17조 : 용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등
- 제18조 : 건축허가 표지의 설치

# 建築法施行規則

제 1 조 (건축허가 신청등)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5 조 본문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정본 및 부분에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표의 (1)난에 계기하는 도서 및 (2)난 내지 (9)난중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난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건축물의 종별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모든 건축물	부근안내도	입면의 배치도	1/100내지 1/200	1. 축척 및 방위 2.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경계선 3.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4.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5. 담, 응벽, 우물, 오물정화조, 배수시설 기타 건축물의 부수시설의 위치
		토지 굴착 부분 정리계획도	입면의		1. 축척 2. 토지의 굴착부분의 정리계획
		자층 평면도	입면의	1/50내지 1/200	1. 축척 및 방위 2. 각 실의 용도 3. 벽의 위치·재료 및 두께 4.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5. 지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6. 복도의 위치 및 폭 7. 비상용 승강기의 위치·기계실·기계 배치와 승강장의 위치 및 폭 8. 기타 승강기·에스카베이터의 위치·기계실 및 기계배치
		오물 정화조의 구조도	입면의	1/30	오물 정화조의 평면상세·종횡단면 상세
		4면 이상의 입면도	입면도	1/50내지 1/200	1. 축척 2. 개구부·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의벽구조 3. 굴뚝의 옥상 돌출부 4. 우편물수취함·국기계양대
(2)	법 제 5 조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면 이상의 단면도 및 부분상세도	입면도	1/20 또는 1/30	1. 축척 2. 거실의 바닥높이, 건축물의 높이, 각 층의 반자높이 3. 벽의 재료 및 높이 4. 내화구조의 벽 및 바닥의 부분상세 5. 처마밀 및 방화문의 구조

구분	건축물의 종별	도서의 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3)	법 제 5 조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구조도	1/50 내지 1/2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간벽의 구조 및 높이</li> <li>계단 또는 경사로의 부분상세</li> <li>붙임들의 뚜껑 및 접합방법</li> <li>변소의 부분상세</li> <li>담의 단면상세</li> </ol>
		구조계산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척</li> <li>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배치평면</li> <li>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단면</li> <li>철골재의 접합부분 상세</li> <li>철근콘크리트의 라멘상세</li> </ol>
(4)	영 제 134 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비상 조명장치 배선도	1/50 내지 1/2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척</li> <li>비상전원의 위치 및 배선</li> </ol>
	영 제 135 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배관배선도	1/50 내지 1/200	배관·배선 및 접지 시설
		부분상세도	1/30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입 관로상세 및 인입관단면</li> <li>단자함의 규격·배관상세 및 단자반상세</li> <li>플박스 및 닥트의 상세</li> </ol>
(6)	영 제 91 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실내 마감표	—	반자 및 벽의 마감재
(7)	영 제 131 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상세도	1/50 이상	비상용 승강기 및 그 승강장의 상세
(8)	기타 건축설비에 관한 규정	건축설비도	입의	승강용 승강기·에스카레이타 기타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구조
(9)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	소방설비도	입의	옥내 소화전설비·스프링크라 설비·물분무 소화설비·포말소화설비·불연성가스 소화설비·증발성액체·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유도등 및 유도표시·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 설비의 상세

②법 제 5 조 본문 및 영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 또는 중요 변경의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분에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안내도·배치도와 대수선 또는 중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그 부분의 단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 48 조 및 영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분에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안내도·배치도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변경후의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여 이를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당해 도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⑤시장·군수는 법 제 26 조 제 3 항·법 제 31 조의 2 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한 규정에 적합하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계기하는 도서이외의 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2 조 (건축허가서 등의 서식) ①영 제 6 조 제 2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부분에 소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영 제 6조제 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의 통지는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건축불허가 통지서로 한다.

**제 3 조 (증축신고등)** ①법 제 5조 단서 및 영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개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건축(증축·개축)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 1항의 건축(증축·개축)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하단의 건축(증축·개축)신고증을 갈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법사항의 보고)** 법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위법사항시정권고에 불응한 때 또는 권고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안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 4호서식에 의한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착공신고서 등의 서식)** ①법 제 7조제 1항 및 영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의 착수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로, 완료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 6호서식에 의한 준공신고서로 한다.

②법 제 7조제 2항 및 영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 7호서식과 같다.

**제 6 조 (가사용승인신청서 등의 서식)** ①법 제 7조제 3항 단서 및 영 제 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은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서로 한다.

②영 제 9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서는 별지 제 9호서식과 같다.

**제 7 조 (중간검사)** ①법 제 17조의 2 및 영 제 1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은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서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영 제 10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건축주에게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보고)** ①법 제 7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증을 교부받은 후 매 2년마다 그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를 1급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1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에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필증사본
2. 배치도
3. 각종평면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시의 각종 평면도를 포함한다)
4.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거실, 통로부분의 변경전, 변경후의 마감재료표 기타 변경부분의 변경전·변경후의 입면도·단면도

**제 9 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 11조제 1항에서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 1조 각항에 계기하는 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에 “허가신청서” 및 “허가신청”은 이를 “협의서” 및 “협의”로 한다.

**제 10 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법 제 9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굴착부분은 그 경사도가 굴착유형 및 토질에 따라 다음 표에 계기하는 비율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돌 또는 콘크리트로 보강할 것. 다만, 시장·군수는 손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축을 쌓게 하거나 콘크리트옹벽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굴착유형	토	질	경사도
절 토	연암 및 이와 유사한 토질		1:0.5
	모래 및 이와 유사한 토질		1:1.5
	모래질흙 및 이와 유사한 토질		1:1
	점토 및 이와 유사한 토질		1:1
성 토	모든 토질에 공통		1:1.5

2. 제 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는 석축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계기하는 기준이하일 것.

석축높이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벧쌓기 절토	1:0.25	1:0.30	—
성토	1:0.30	1:0.35	—
활쌓기 절토	1:0.20	1:0.25	1:0.30
성토	1:0.25	1:0.30	1:0.35

3. 굴착부분의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4. 굴착부분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굴착부분면적의 5분의1 이상인 면적의 단을 지을 것. 다만, 시장·군수가 그 굴착부분의 토질·경사도·보강구조물의 안정성 등으로 보아 손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보강구조물부분 및 배수를 위한 수로부분을 제외한 굴착부분(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단을 포함한다)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를 심거나 잔디부치기로 환경정리(이하 “조경”이라 한다)를 할 것.

②제 1항의 기준이외에 굴착부분의 손괴의 방지 및 조경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시장·군수가 정한다.

③시장·군수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방화구조부분에 사용하는 목모시멘트관 부분
2.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 및 망입유리 부분
3.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반자·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부분
4.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철제이외의 난간부분
5. 전선·배전판·스위치·콘센트·배관설비의 부분 및 승강기의 삭도부분
6. 온돌의 굴뚝에 사용하는 스테이트관 부분

**제12조 (위험물의 저장·처리시설)** ①영 제14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소방법시행령 별표 4에 계기하는 것으로서 동표에 계기하는 수량의 2배(석유류에 있어서는 10배) 이상인 수량의 물품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지상시설을 말한다.

②동일 대지안에서 2종류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에 있어서의 당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수량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소방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지)** ①법 제4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물에 출입하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대한 보고)** 법 제42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보고서로 한다.

**제15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휴대하는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6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74조제 1항에 규정하는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층인 재해복구용 건축물
2. 흥행 또는 전담회용 건축물로서 높이 13미터 이하의 것.
3. 1층인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것이거나 2층인 목조의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것.

②법 제4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는 제 3조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 등)**

①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에 계기하는 공작물(이하 “공작물”이라 한다)의 축조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분에 당해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표에 제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부근안내도 및 배치도	1. 축척·방위·도로 및 부표가 되는 지물
입면도	2. 대지경계선과 그 안의 공작물의 위치 1. 축척
단면도	2. 공작물의 높이·재료의 증별 및 치수 1. 축척
구조상세도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재료의 증별 및 치수 1. 축척
구조계산서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재료의 증별 및 치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산정 및 단면산정과정

②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과 당해 건축물에 부수되는 공작물의 축조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

부서류 및 도서중 제 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첨부서류 및 도서와 중복되는 것은 이를 신청서에 표시하고 그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는 별지 제 17 호서식에 의한 용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신청서의 부분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건축허가표지의 설치) ①법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 18 호서식과 같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건축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③주소	⑤소재지	
설계자	④성명	( ) 급건축사등록번호	전화
	⑥주소 및 사무소명	⑧소재지	
공사감리자	⑦성명	( ) 급건축사등록번호	전화
	⑨주소 및 사무소명	⑪소재지	
공사시공사	⑩성명	건설업면허번호	전화
	⑫주소	⑬소재지	
배지조건	⑭위치	⑮지역	구
	⑯면적	⑰공사종별	
	⑱전도	⑲도로에접하는길이	
	⑳도로폭		
⑳용도	주용도	기타용도	응용도
면적	㉑신청구분	㉒신청이외구분	㉓합계
	㉔건축면적		㉕주차장면적
	㉖인면적		㉗배물
	㉘확공예정면적		㉙확공예정면적
		년	월
		일	일

190mm × 268mm (배장지 50g/m<sup>2</sup>)

7803-1-1(2-1) A (1)  
1973. 9. 6 승인

(주 의)

1. 신청건축물이 2동 이상인 때에는 신청건축물 동별개요를 동 (1동의 연면적 10m<sup>2</sup>이내의 것을 제외한다)마다 따로 작성 첨 부하십시오.
2.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기재한 것에 의거 구분하고 사용원동기의 출력(마력)을 기입하십시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시오.
4.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가 미정일 때에는 기입하지 마시오.
5. 공사시공자란은 도급공사일 때에만 기입하십시오.
6. 공사 종별이 증축, 대수선, 중요변경 또는 용도변경일 때에는 신청이의 부분의 준공검사필증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①용	도	②주거용인경우 세 대 수							
③공	사	종	④지	⑤지	⑥지	⑦지	⑧지	⑨지	⑩지
⑪구		조	방	계	포				
⑫외	벽	재	⑬지	⑭지	⑮지	⑯지	⑰지	⑱지	⑲지
구	분	⑳층	별	층	층	층	층	층	층
	⑳신	청	부	분					
	㉑신	청	의	부	분				
	㉒합	계							
	㉓기	동	치	수	(부	조,	침	근	관
	㉔크	리	트	조	에	합			
	㉕정	가	제	간	의	거	리		
	㉖층	(부	조	에	합				
	㉗(조	적	조	에	합				
	㉘거	실	만	자	높	이			
	㉙최	고	높	이					
	㉚최	고	저	마	높	이			
	㉛1	층	거	실	바	닥	높	이	
진	④변	소	④비	상	용	④배	수		
축	⑥난	방	상	강	기	상	장	의	
설	⑥비	상	조	명	장	기	타		
비									

1.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이 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 2 호서석]

건축물허가통지서

년 월 일  
계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축주 귀하

별첨 허가신청서 및 첨부도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계획은 다음 이유로 당해 건축물의 터지, 구조 및 건축설비에 관한 건축법, 동시행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허가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시 장·군 수)

이 유

7803-1-2A(1)  
1973. 9. 6 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0g/m<sup>2</sup>)

[별지 제 3 호서석]

건축(증축·개축) 신고서

건축주	①성명 ③주소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④터지위치	⑤지역	⑥지구	
⑦주용도	⑧공사종별	증축, 개축	
⑨면적	⑩신청부분	⑪신청어의부분(기준부분)	⑫합계
⑬건축년월			
⑭연면적			
⑮건폐율	⑯층수		
⑰구조	⑱대지면적		
⑲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⑳착공예정일	년 월 일

건축법시행령 제 6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시, 장, 군 수) 귀하 신청자

건축(증축, 개축) 신고증

건축주	①성명 ③주소	②주민등록번호	체 호
④터지위치	⑤지역	⑥지구	
⑦터지면적	⑧공사종별	⑨증, 개축년월	
⑩주용도	⑪구조	⑫층수	
⑬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⑭착공예정일	년 월 일

건축법시행규칙 제 3 호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 함

(시, 장, 군 수)

귀하

7803-1-11A(1)  
1973. 9. 6 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0g/m<sup>2</sup>)

[별지 제 4 호서식]

위 법건축공사보고서		제 호	
①성 주	명 소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공사감리자	명 소	⑤자격 ( )급 건축사등록제 호	전화
공사시공자	명 소	⑧주민등록번호	전화
⑩배지 위치			
⑪허가 번호	⑫허가년월일	년 월 일	
⑬용 도	⑭구 조		
⑮배지면적	⑯층 수	지상( ) 지하( )	
⑰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⑱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⑲건축면적	⑳연면적		
위법사항	㉑발생일자	년 월 일	
조치내용	㉒배용	년 월 일	
	㉓일자	년 월 일	
	㉔배용	년 월 일	
위의 공사는 건축법 제 6 조제 2 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아 건축법 제 6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시장·관수) 귀하	보고자	감	건축사
7803-1-15A	190mm×268mm(신문용지 50g/m <sup>2</sup> )		④
1973. 9. 6승인			

[별지 제 5 호서식]

착공신고서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공사감리자	④성 명 ⑤자격 ( )급 건축사등록제 호 ⑥주소 및 사무소 전화
공사시공자	⑦성명또는상호 ⑧자격 ⑨자 격 전실업면허 제 호 ⑩주소 전화
⑩배지 위치	
⑪허가 번호	⑫허가일자 년 월 일
⑬공사종별	⑭층 수
⑮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⑯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⑰지 역	⑱지구
공사하는건축물의 내역	⑲용 도 ⑲구 조 ⑲건축면적 ⑲연면적 ⑲지 역 별 도시형, 농촌형
이전축물이주 택또는주택을 포함하는데에 받게하시오	⑲소 유 별 자택, 임대주택, 급여주택, 기타 ⑲형 별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점용주택, 기타 ⑲주택신설여부 신설되는주택( ) 세대. 호 기존주택의증축·계축· ⑲주택자금융자 ( ) 주택자금( )원 ⑲동 수 ⑲주택연면적 ⑲거실면적의합계
건축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⑲ 신고인
(시장·관수) 귀하	신고인
7803-1-6A(1)	(190mm×268mm-신문용지 50g/m <sup>2</sup> )
1973. 9. 6승인	

[별지 제 6 호서식]

준공 신고서

진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③주소	⑤자적( )급 건축사등록제 호		
설계자	④성명 및 주소	전화		
공사감리자	⑥사무소	⑧자적( )급 건축사등록제 호		
	⑦사무소	전화		
공사공자	⑩성명또는상호	⑪자적( )급 건축사등록제 호		
	⑨사무소	전화		
⑮대지위치				
⑭허가번호	⑮허가일자	년	월	일
⑯착공년월일	⑯준공일자	년	월	일
⑰지역	⑰지구			
⑱대지면적	⑱층수			
⑳용도	㉑구조			
㉒최고높이	㉒처마높이			
건축물내역	㉓명칭	㉓신청부분	㉓신청이외부분	㉓합계
	㉔면적			
	㉕건축면적			

190mm×268mm(신분용지 50g/m<sup>2</sup>)

7803-1-4A(1)  
1973. 9. 6 승인

⑳공사종별	㉕주거용인경우제대수			
㉑구조	㉕의벽재로			
㉒지방재료	㉗저마재로			
㉓구분	층	층	층	층계( )층
	층	층	층	층
바닥	㉘신청부분			
면적	㉘신청이외부분			
	㉙합계			
	㉚용도			
	㉛거실의내장재료의종류			
	㉜홀로의내장재료의종류			
	㉝거실의반자높이			
	㉞퇴대방화구획의면적			
	㉟피난계단의종류			
	㊱진출용구로부위도로에이르는폭			
	㊲최고높이			
건축설비	㊳변소	비상장기	㊵대수	
	㊴냉·난방		㊶승강장의면적	
	㊷비상용조명장치	㊸기타		

신청 건축물 등 별개요 제 호

건축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 7 호서식]

중 공 공 점 사 필 증  
제 호  
진 축 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  
정에 적합함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군수) ①

건축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설계자	③주소	④소재지	( ) 급 건축사등록번호
공사감독자	⑤성명	⑥주소	전화
공시공자	⑦성명	⑧소재지	( ) 급 건축사등록번호
	⑨주소	⑩소재지	전화
	⑪성명 또는 상호	⑫소재지	전화
	⑬주소	⑭소재지	전화
⑮대지 위치	⑮허가일자	⑯년월일	
⑰허가 번호	⑰지구		
⑱용도 지역	⑱층수	⑲지하층 수	
⑳대지면적	㉑건축이외부분(기초)	㉒주상지 면적	
㉓명칭	건축부분	합계	
㉔건축면적		㉕전매율	
㉖연면적		㉗용적율	
㉘용도	주용도	기타용도	

7803-1-5A (1)  
1973.09.6 승인

190mm X 268mm (배상지 60g/m<sup>2</sup>)

⑳공사종별	㉑추가용인경우 세	㉒의벽재료	㉓처마재료
㉔구			
㉕지붕재료			
㉖구분	중	중	중
㉗구분	중	중	중
㉘신청부분			
㉙신청이외부분			
㉚합계			
㉛용도			
㉜거실의 내장재료의 부 종			
㉝복로의 내장재료의 부 종			
㉞최대방화구획의 면적			
㉟거실의 반사 높이			
㊱건축물출입구로부터 도로에 이르는 폭			
㊲피난 계단의 종류			
㊳최고 높이			
건축 설비	㊴변소	비상용 송강기	㊵대수
	㊶냉난방	㊷기타	㊸승강기의 면적
	㊹비명장치		
전사년월일	년	월	일
전사원지위적명			

가사용 승인 신청서

전 속 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처리 기 간
	③주 소	전화	3 일
공사감리자	④성 명	⑤자 격 ( )급건축사등록 계 호	
	⑥주 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사시공자	⑦성명 또는 상호	⑧자 격 ( )설업 (면허) 계 호	
	⑨주 소	전화	
⑩래지 위치			
⑪허가 번호		⑫허가 일자	년 월 일
⑬매지면적		⑭건축면적	
⑮주요 용도		⑯구조	
⑰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⑱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⑲공사현황			
⑳구 분 허가내역		가사용신청내역	
㉑층 수	지상( ) 지하( )	지상( ) 지하( )	
㉒면적			
㉓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건축법 제 7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귀하			
주의 : 공사현황은 증별로 구체적 인 공정을 기입하시오.			

7803-1-16A  
1973. 9. 6 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0g/m<sup>2</sup>)

가사용 승인서

제 호

건축법 제 7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축물을 검사한 결과 결과 건축법의 규정에 합하므로 년 월 일까지 가사용을 승인함.

년 월 일

(시장·군수) ㉑

건축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③주 소		
④래지 위치		⑤허가 일자	년 월 일
⑥매지 위치			
⑦주요 용도		⑧공사종별	
⑨가사용층수	지상( ) 지하( )	⑩구조	
⑪가사용바닥면적		⑫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⑬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⑭건설년월일	년 월 일		
⑮건설원칙위성명			

- 주의 1. 이 승인서는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시오  
 2. 이 승인서를 받은후 건축공사중 위법사항이 생기면 취소됩니다.  
 3. 이 승인서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7803-1-17A  
1973. 9. 6 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0g/m<sup>2</sup>)

[별지 제10호서식]

중간검사신청서			
건축주	① 성명 ③ 주소	② 주민등록번호	전화
공사감리자	④ 성명 ⑥ 주소 및 사무소명	⑤ 자격 ( )급 건축사등록번호	전화
공사시공자	⑦ 성명 ⑨ 주소	⑧ 자격 건설업면허번호	전화
⑩ 중간검사에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⑪ 허가번호	⑫ 허가일자	년 월 일	
⑬ 대지위치	⑭ 지역·지구		
⑮ 대지면적	⑯ 건축면적		
⑰ 층수	지상( ) 지하( )		
⑱ 공사종별	⑳ 수용도		
㉑ 구조	㉒ 전폐율		
㉓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중간검사내역	㉔ 기초부분		
	㉕ 옥상부분		
건축법 제 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⑮
(시정·군수) 귀하			

7803-1-18A  
1973. 9. 6 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0g/m<sup>2</sup>)

[별지 제11호서식]

중간검사필증			
건축법 제 7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공사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을 증명함			
(시정·군수)		⑭	
건축주	① 성명 ③ 주소	② 주민등록번호	전화
④ 대지위치	⑤ 허가번호	⑥ 허가일자	년 월 일
⑦ 지역	⑧ 지구		
⑨ 대지면적	⑩ 건축면적		
⑪ 연면적	⑫ 공사종별		
⑬ 층수	지상( ) 지하( )	⑬ 구조	
⑮ 수용도	⑯ 전폐율		
중간검사내역	⑰ 기초부분		
	⑱ 옥상부분		
⑲ 검사년월일	년 월 일		
⑳ 검사원	직위·성명		

7803-1-19A  
1973. 9. 6 승인

190mm×268mm(신문용지 50g/m<sup>2</sup>)

건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

건축주·관리자 또는 소유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점검대상	③주소	진 화		
점검대상	④성명	⑤자격( )	건축사	등록제 호
⑦대지위치	⑥주소및사유소명	진 화		
⑧준공검사발령교부일자	년 월 일	⑨전교일자	년 월 일(제 회보고)	
⑩지역	⑪지구			
⑫대지면적	⑬층수	⑭지하층의		
⑮건축면적	⑯주대장면			
⑰인면적	⑱진폐율	⑲용적율		
⑳주용도	㉑층수			
㉒구조	㉓의벽재료			
㉔지방재료	㉕처마재료			
전	구분	층	층	층 계 ( )층
축	바닥면적			
물	용도			
	기실의내장재의종류			
	통로의내장재의종류			

190mm X 268mm(신문용지 50g/m<sup>2</sup>)

7803-1-20A  
1973. 9. 6. 승인

⑳ 기실의 판자 이				
㉑ 최후 방편 적				
㉒ 피난 계 단 의 류				
㉓ 건축 물 의 출입 로 에 이 르 는 통 로 의 폭				
㉔ 최 고 높 이				
㉕ 판 리 기 간				
진 축 설 비	㉖ 변 소	비 상 용 승 강 가	㉗ 매 수	
	㉘ 병, 전 방		㉙ 승 강 장 의 폭	
	㉚ 비 상 용 조 명 장 치	㉛ 기 타		
㉜ 준 공 검 사 발 령 교 부 후 경 내 역				
㉝ 기 타 변 경 사 항				

1. 건축법 제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 이 보고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습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시장, 관수) 귀하



[별지 제 13호서식]

위법건축물표지

① 위치	
② 건축주	③ 공사시공자
④ 허가또는 착공년월일	년 월 일 ⑤ 허가번호
⑥ 주요용도	
⑦ 위반사항	
⑧ 조치사항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7803-1-21A  
1973. 9. 6. 승인

750mm × 400mm

[별지 제 14호서식]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

설계자	①성명	②자격	( )급 건축사등록 제 호
	③주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사감리자	④성명	⑤자격	( )급 건축사등록 제 호
	⑥주소 및 사무소명	전화	
공사시공자	⑦성명 또는 상	⑧자격	건설업(면허) 제 호
	⑨주소	전화	
건축주	⑩성명	⑪주민등록 번호	
	⑫주소	전화	
대리위치			
허가번호	⑬허가일자	년	월 일
면적	⑭지구		
대지면적	⑮건축면적		
구조	⑯연면적		
층수	지상( ) 지하( )	⑰주요용도	
공사종별	⑱건축물		
위반사항	⑲발생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⑳내용		
적발자	㉑적발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㉒적발성명		
조치사항	㉓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㉔내용		

건축법 제42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 및 관련설계자등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시장·군수)

년 월 일

190mm × 268mm (신용지 50g/m<sup>2</sup>)

제 호

건축물등출입검사공무원증

사  
진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자 19 : :  
지 19 : :

위 공무원은 건축법 제4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 함

년 월 일

(건설부장관  
도 지 사  
시장·군수)

7803-1-7A(1)  
1973. 9. 6 승인

90%×70% (청상지 120g/m<sup>2</sup>)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③주소	⑤소재지	건축설업면허호
④정명 또는 상소	⑥주소	전화
⑦위치	⑧건축면적	
⑨면적	⑩주상도	
⑪전폐율	⑫층수	
⑬준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⑭좌공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예정일)	

건축법 제4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  
(시장·군수) 귀하 신고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접수증

년 월 일

건축법 제4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접수함 (인)  
(시장·군수)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위치	
⑤면적	⑥건축면적
⑦층도	⑧의면적
⑨전폐율	⑩층수
⑪준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⑫좌공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예정일)

7803-1-23A  
1973. 9. 6 승인

190%×268% (신분용지 50g/m<sup>2</sup>)

[별지 제 17호서식]

(정본)		응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 일
건축주	①성 명 소	②주민등록번호		
설계자	④성 명 소 및 사무소명	⑤자 격	( )급 제	건축사 호
공사 시공자	⑦성명 또는 상호	⑧가 격	건설업 면허	호
⑩배 지 위치	전화			
⑪지 역	⑫지 구			
⑬배 지 면적				
⑭착 공 예정 일	년 월 일	⑮준 공 예정 일	년 월 일	
공작물의 개요	⑯종 류			
	⑰높 이			
	⑱구 조			
	⑲공작물규모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시장·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인)

7803-1-3(2-2)A(1)  
1973. 9. 6 승인

190% × 268% (신분용지 50g/m<sup>2</sup>)

[별지 제 17호서식]

(부분)		응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서		제 호
건축주	①성 명 소	②주민등록번호		
설계자	④성 명 소 및 사무소명	⑤자 격	( )급 건축사등록 호	
공사 시공자	⑦성명 또는 상호	⑧자 격	건설업면허계 호	
⑩배 지 위치	전화			
⑪지 역	⑫지 구			
⑬배 지 면적				
⑭착 공 예정 일	년 월 일	⑮준 공 예정 일	년 월 일	
공작물의 개요	⑯종 류			
	⑰높 이			
	⑱구 조			
	⑲공작물규모			

시장·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인)

7803-1-3(2-2)A(2)  
1973. 9. 6 승인

190% × 268% (신분용지 50g/m<sup>2</sup>)

건축허가표지

건축주	①성명	
	②주소	
설계자	③성명	
	④사무소명	
공사 감리자	⑤성명	
	⑥사무소명	
공사 시공자	⑦설명표 상호	
	⑧주소	
공사현장 관리자	⑨성명	
	⑩주소	
⑪허가번호		⑫허가일자
⑬대지위치		
⑭건축면적		⑮연면적
⑯주요용도		⑰층수 지상( ) 지하( )
⑱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허가기관)		